

서울특별시 마포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3-172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3. 11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 종료 및 서울미래교육지구 사업 출범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미래교육지구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전부개정을 추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미래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」로 제명을 변경함
나. ‘혁신교육’, ‘서울형혁신교육지구사업’에 관한 정의를 삭제하고 ‘미래교육’, ‘미래교육지구사업’에 대한 정의를 추가함.(안 제2조)

다. 마포구-교육청 미래교육지구 협약 내용을 반영하여 미래교육지구 사업의 범위를 정함(안 제3조)

라. 미래교육지구 운영위원회에 대한 설치 및 기능, 구성,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(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)

3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미래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 : 2023. 10. 5. ~ 10. 25. (제출된 의견 없음)
- 2)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 결과 : 원안동의
- 3) 새마포담당관의 위원회 사전심사 결과 : 원안 동의
- 4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: 원안동의
- 5) 가족행복지원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: 자체 개선안 동의

해당 내용(현행)	자체 개선안	수정안
제7조(위원회 구성 및 운영)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<u>구청장이 위촉한다.</u>	제7조(위원회 구성 및 운영) ③ ----- ----- <u>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.</u>	제7조(위원회 구성 및 운영) ③ ----- ----- <u>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.</u>

- 6) 제1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(2023. 11. 8.): 원안의결

서울특별시 마포구 미래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가 서울특별시 교육청 및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서울미래교육지구 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마포구미래교육지구”(이하 “미래교육지구”라 한다)란 서울특별시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이 미래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한 자치구를 말한다.
2. “미래교육지구 사업”이란 교육감이 미래교육지구로 지정한 마포구가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(이하 “서부교육지원청”이라 한다)과 공동으로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.

제3조(미래교육지구 사업계획의 수립)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미래교육지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시행하는 미래교육지구 사업 등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.

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.

1. 미래교육지구 운영에 대한 사업추진 방향 및 추진계획
2.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
3. 미래교육지구 평가 및 지도·점검에 관한사항
4. 그밖에 미래교육지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

제4조(미래교육지구 사업의 범위) 미래교육지구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지역연계 학교 교육과정 지원 사업
2. 지역연계 돌봄 및 방과 후 활동 지원 사업
3. 마포구 교육 특화사업
4. 그 밖에 미래교육지구 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5조(보조금의 지원)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미래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·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6조(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) ①구청장은 미래교육지구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“미래교육지구 운영위원회”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미래교육지구의 지정기간과 같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미래교육지구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
2. 미래교육지구 운영을 위해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
3. 그 밖에 미래교육지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에 대한 자문

제7조(위원회 구성 및 운영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복지동행국장이 된다.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. 부위원장은 교육정책과장이 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위원 중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.

1. 마포구 관내 초·중·고등학교 교사 및 학교장
2. 서울특별시 교육청 및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 부서장 및 미래교육 담당 업무에 대해 이해가 높고 관심이 있는 사람
3. 지역사회의 아동·청소년 미래교육에 대한 이해가 높고 관심이 있는 사람
4.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④ 위원회 소관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, 간사는 미래교육지구의 담당팀장으로 한다.

제8조(위원의 임기 및 위촉해지) 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② 위원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, 장기불참,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청장이 해촉할 수 있다.

③ 궐위 또는 사퇴 등의 사유로 인해 새로 위촉되는 위촉직 위원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9조(회의 등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0조(수당 등)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1조 (대외협력) 구청장은 미래교육지구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, 대학, 기업 등과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서울특별시 마포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와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,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내 각급 학교 및 학부모, 지역주민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아동·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행복한 지역사회의 교육환경을 조성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학생”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“마포구”라 한다) 소재 초·중·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해당 연령의 청소년을 말한다.</p> <p>2. “서울형혁신교육지구”란 서울특별시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이 혁신교육</p>	<p><u>서울특별시 마포구 미래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가 서울특별시 교육청 및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서울미래교육지구 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“마포구미래교육지구” (이하 “미래교육지구”라 한다)란 서울특별시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이 미래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한 자치구를 말한다.</p> <p>2. “미래교육지구 사업”이란 교육감이 미래교육지구로 지정한 마포구가 서울특별시교</p>

지구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
지정한 자치구를 말한다.

3. “혁신교육지구 사업”이란
교육감이 서울형혁신교육지구
로 지정한 마포구가 서울특별
시 서부교육지원청(이하 “서
부교육지원청”이라 한다)과
공동으로 마포구 관내의 학
생, 학부모, 교원, 지역주민
등 교육주체와 민·관·학 거
버넌스를 구축하여 운영하는
사업을 말한다.

4. “민·관·학 거버넌스”란
혁신교육의 투명성, 효율성,
전문성 등의 제고를 위하여
학생, 학부모, 교육시민사회
단체, 행정기관, 학교의 참여
를 통해 교육의제 형성, 목표
설정, 결정과정에 함께 참여
하는 기구를 말한다.

제3조(혁신교육지구 사업계획의
수립)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
혁신교육지구 사업계획을 수립

육청 및 서울특별시 서부교육
지원청(이하 “서부교육지원
청”이라 한다)과 공동으로
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교육과
정을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
다.

<삭 제>

<삭 제>

제3조(미래교육지구 사업계획의
수립) ① -----
----- 미래교육
지구 사업계획-----

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 등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.

<신 설>

제4조(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범위)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공교육 혁신 사업
2. 학교-지역사회 연계 교육 사업
3. 민·관·학 거버넌스 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
4. 지역연계 아동·청소년 복지 증진 사업
5. 지역특화 사업
6. 마을교육공동체 구축 및 운영 지원 사업

-----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시행하는 미래교육지구 -----

-----.

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.

1. 미래교육지구 운영에 대한 사업추진 방향 및 추진계획
2.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
3. 미래교육지구 평가 및 지도·점검에 관한사항
4. 그밖에 미래교육지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

제4조(미래교육지구 사업의 범위) 미래교육지구 -----
-----.

1. 지역연계 학교 교육과정 지원 사업
2. 지역연계 돌봄 및 방과 후 활동 지원 사업
3. 마포구 교육 특화사업

<삭 제>

<삭 제>

<삭 제>

7. 그 밖에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5조(보조금의 지원)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·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제6조(운영협의회 설치 및 기능)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·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(이하 “운영협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정책 방향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2.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민·관·학 협력 및 연계에 관한 사항
3.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평가 및 보고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구청장이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<신설>

4. ----- 미래교육지구 사업과 관련하여 -----

제5조(보조금의 지원) ① -----
----- 미래교육지구 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6조(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) ① 구청장은 미래교육지구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“미래교육지구 운영위원회” 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미래교육지구의 지정기간과 같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미래교육지구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
2. 미래교육지구 운영을 위해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
3. 그 밖에 미래교육지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에 대한 자문

제7조(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)

- ① 운영협의회는 공동위원장 3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② 운영협의회 공동위원장은 구청장,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민간대표가 되며 민간대표는 운영협의회에서 호선한다.

-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마포구와 서부교육지원청의 혁신교육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마포구 관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다음

제7조(위원회 구성 및 운영) ①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.
- ② 위원장은 복지동행국장이 된다.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. 부위원장은 교육정책과장이 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위원 중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-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.

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.

1. (생략)

2. 마포구 관내 초·중·고등학교 학생

3. 마포구 관내 초·중·고등학교 학부모

4. 지역사회의 아동·청소년 교육 관련 유관기관 대표, 교육 전문가 등 혁신교육에 대한 이해가 높고 관심이 있는 사람

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운영협의회의 특성상 해당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및 자격요건 등의 사유로 지키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

⑤ 위원장은 운영협의회를 대표하고,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⑥ 위원장 3명 전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

1. (현행과 같음)

2. 서울특별시 교육청 및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 부서장 및 미래교육 담당 업무에 대해 이해가 높고 관심이 있는 사람

3. 지역사회의 아동·청소년 미래교육에 대한 이해가 높고 관심이 있는 사람

4.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④ 위원회 소관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, 간사는 미래교육 지구의 담당팀장으로 한다.

<삭제>

<삭제>

때에는 위원장 2명 이상의 합의에 따라 지명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⑦ 운영협의회에 소관 사무를 처리할 2명의 공동간사를 두되, 간사는 마포구와 서부교육지원청의 혁신교육업무 소관 부서장이 된다.

제8조(실무협의회 설치 및 기능)

① 운영협의회가 위임한 사항과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업무에 대해서 기획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.

② 실무협의회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획·조정한다.

1. 사업 계획 수립 및 평가
2. 사업 모니터링, 컨설팅 및 실무 지원
3. 민·관·학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지원
4.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조정
5. 그 밖에 혁신교육지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실무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

<신 설>

<삭 제>

제8조(위원의 임기 및 위촉해지)

① 위촉직 위원 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② 위원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, 장기불참,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청장이 해촉할 수 있다.

③ 궐위 또는 사퇴 등의 사유로 인해 새로 위촉되는 위촉직 위

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<삭 제>

제9조(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)

① 실무협의회는 공동위원장 3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실무협회의 공동위원장은 마포구 및 서부교육지원청의 혁신교육업무 소관 부서장 및 민간대표가 되며, 민간대표는 실무협의회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은 마포구와 서부교육지원청의 혁신교육 담당 공무원, 마포구 소재 초·중·고등학교 학생, 학부모, 교원, 교육 관련 단체 및 유관기관 임·직원, 혁신교육에 관심 있는 주민으로 구성한다.

④ 실무협의회에 소관 사무를 처리할 2명의 공동간사를 두되, 간사는 마포구와 서부교육지원청의 소관 부서 팀장으로 한다.

⑤ 실무협의회 산하에 필요에 따라 분과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⑥ 분과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10조(회의 등) ① 운영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

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, 임시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.

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.

⑤ 그 밖에 운영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협의회의 의결로 정한다.

제11조(위원의 임기) ① 운영협의회와 실무협의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당연직 위원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12조(위원의 해촉) 구청장은 위

제9조(회의 등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.

<삭 제>

② -----
----- 개회하고 -----
----- .

<삭 제>

<삭 제>

제11조 (대외협력) 구청장은 미래교육지구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, 대학, 기업 등과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<삭 제>

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, 공동위원장과 협의하여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
2.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3.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

제13조(수당 등)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4조 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10조(수당 등) -----
----- 예산-----
----- . -

----- .

<삭 제>

서울특별시 마포구 미래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- 가. 제5조(보조금의 지원) 미래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·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음
- 나. 제10조(수당)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가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

3. 미첨부 사유

- 가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
- 나. 연평균 1억원 미만의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 수당 지급

4. 작성자: 복지동행국 교육정책과 정아영(☎ 3153-8682)